|  |
| --- |
| **문제에서 답안의 분량을 제한한 경우 제한된 분량을 초과한 부분은 채점에서 고려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 1】(12점)**

회계감사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회계감사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물음 1)** 최근 미국의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감사인을 일정주기마다 교체할 것을 고려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과 연구자들 중 일부는 감사인을 일정주기마다 교체하는 것이 감사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오히려 감사품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요구사항]**

감사인을 일정주기마다 교체함으로써 감사품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음 양식에 따라 각각 **2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  |  |
| --- | --- |
| **긍정적 측면** |  |
| **부정적 측면** |  |

**(물음 2)** 우리나라는 현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증권집단소송제도란 기업의 분식회계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해당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들도 별도의 소송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요구사항]**

기업과 투자자들을 고려할 때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음 양식에 따라 각각 **2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  |  |
| --- | --- |
| **긍정적 측면** |  |
| **부정적 측면** |  |

**(물음 3)** 갑㈜는 당기에 특수관계자 을㈜와의 중요한 거래와 채권, 채무가 있다. 당기 매출액의 60%는 특수관계자 을㈜와의 거래로부터 발생하였다. 당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은 총 채권잔액의 80%에 이르며, 올해 들어 채권회수가 지연되고 있다.

갑㈜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채권, 채무를 재무제표의 주석에 적절하게 기재하고 있다. 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왜곡사항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정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고 특기사항이 없는 적정의견 감사보고서(표준감사보고서)를 발행하였다.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3개월 후 투자자 중 1인이 이 감사보고서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였다. 그 후 특수관계자 을㈜가 도산하였고 이에 따라 갑㈜의 주가가 크게 폭락하자 갑㈜에 투자한 위 투자자가 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투자자는, 실제로는 특히 중요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채권, 채무가 존재하였고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손해를 감사인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사인은 특기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감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구사항]**

투자자와 감사인의 주장 중 어떤 주장이 합리적인지 선택하고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다음 양식에 따라 **2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  |  |
| --- | --- |
| **합리적인 주장** | **투자자 / 감사인** |
| **판단의 근거** |  |

**(물음 4)** 비상장회사인 병㈜는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회계직원이 없다. 따라서 병㈜는 감사인인 X회계법인에게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현금흐름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X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는 회사의 경영자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감사인은 회사를 대신하여 현금흐름표를 대리하여 작성해준다’는 것을 주지하였으며, 회사의 경영자도 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해 준 현금흐름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의 경영자에게 있다는 것을 감사인과 회사의 경영자가 모두 알고 있다.

**[요구사항]**

위 상황에서 공인회계사가 현금흐름표를 작성해 주는 것이 법률(또는 회계감사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그 법률 등에서 허용 또는 금지하는 이유를 다음 양식에 따라 기술하시오.

|  |  |
| --- | --- |
| **구 분** | **답 안** |
| **대리작성가능 여부** | ○ / × |
| **판단의 근거** |  |

**【문제 2】(15점)**

X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A는 회계감사경력 5년차이다. 공인회계사 A는 갑㈜의 회계감사 팀장(in-charge)을 맡고 있다. 공인회계사 A는 경력 3년차 1명, 2년차 1명, 그리고 1년차 2명으로 감사팀을 구성하였다.

갑㈜는 12월 31일이 결산일이며, 자산총계는 3천억원, 부채총계는 2천억원, 그리고 자본총계는 1천억원이다. 매출액은 3천 5백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250억원, 당기순이익은 200억원이다.

공인회계사 A는 감사를 계획함에 있어 X회계법인의 감사매뉴얼에 따라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중요성금액을 2억 5천만원, 그리고 특히 중요한 정도의 금액기준으로 5억원을 설정하였다.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재무제표의 구성상(예를 들면 계정분류의 오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정 계정잔액의 왜곡 등)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의 기준은 10억원, 그리고 특히 중요한 정도의 금액의 기준은 20억원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금액의 기준은 5백만원으로 설정하였다.

**[요구사항]**

다음에 주어진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항목별 답안을 아래 <답안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단, 주어진 각 상황은 서로 **독립적**이다.

·항목 1: 감사인이 제시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과, 이 경우에 감사보고서 문단 중 수정해야 할 항목을 아래 <보기>에서 **모두 찾아 기재**

·항목 2: 주어진 상황이 경영자확인서에 미수정왜곡사항 등으로 추가할 사항인지 여부를 표시(○ 또는 ×)

·항목 3: 항목 1과 항목 2에 대한 판단 근거

|  |  |  |  |  |
| --- | --- | --- | --- | --- |
| **< 보 기 >** | | | | |
| **감사의견과 특기사항** | |  | **감사보고서 문단** | |
| ① | 적정의견 |  | (가) | 범위문단 |
| ② | 적정의견＋특기사항 |  | (나) | 중간문단 |
| ③ | 한정의견 |  |  |  |
| ④ | 한정의견＋특기사항 |  |  |  |
| ⑤ | 부적정의견 |  |  |  |
| ⑥ | 부적정의견＋특기사항 |  |  |  |

**<답안양식>**

|  |  |  |  |  |
| --- | --- | --- | --- | --- |
| 상황 | **(항목 1)** | | **(항목 2)** | **(항목 3)** |
| 감사의견과 특기사항 | 감사보고서 문단 수정 | 경영자확인서에 미수정왜곡사항 등으로 추가 | 판단의 근거 |
| 상황1 | ①～⑥ | (가)～(나) 또는 “없음” | ○ 또는 × |  |
| 상황2 | 〃 | 〃 | 〃 |  |
| 상황3 | 〃 | 〃 | 〃 |  |
| 상황4 | 〃 | 〃 | 〃 |  |
| 상황5 | 〃 | 〃 | 〃 |  |

**(상황 1)** 감사팀은 12월 30일 갑㈜가 외상매입거래 3억원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동 거래로 인한 재고자산은 재고자산 명세서와 기말 장부상 잔액에 포함되어 있었다. 회사는 감사인의 지적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

**(상황 2)** 갑㈜는 결산일로부터 1개월 전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변경하였다. 감사인인 공인회계사 A는 이러한 회계변경이 변경효과는 중요하지만 회계기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갑㈜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에 대하여 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있다.

재고자산 중 일부는 고가의 컴퓨터이며 장부가액은 50억원이다. 재고자산 실사결과 11억원에 상당하는 재고수량이 부족하여 원인을 파악한 결과 정상적으로 접대비로 회계처리한 타계정 대체수량이 재고자산수불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재고자산수불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현금예금 중 4억원은 당기에 발생한 종업원의 횡령으로 당기 중에 배상조치하였으며 회사는 해당 금액 전액을 종업원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고 매월 2백만원을 급여에서 공제(누적 공제액 4백만원)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종업원의 퇴직일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해당 종업원은 이미 신용불량상태에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또한 추후 다른 직장을 가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감사인과 회사는 종업원이 퇴직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이외(퇴직금은 없다고 가정)에는 배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다른 종업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해당 종업원이 사망할 때까지 장부와 재무제표에서 해당 배상원금을 순장부가액으로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감사인에게도 이런 정책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재무제표의 수정을 거부하였다.

**(상황 3)** 감사팀은 12월 30일 갑㈜가 외상매입거래 3억원을 누락하였으며, 동 거래로 인한 미착재고도 재고자산명세서와 기말장부상 잔액에서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20개의 영업소 중 19개 영업소는 문제가 없었으나, 1개 영업소의 당기 매출총액 1억원에 대해서는 매출증빙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인은 어떠한 감사절차로도 해당 매출이 실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갑㈜는 매입 누락과 관련한 모든 오류는 회계기준에 따라 수정하지만 특정 영업소의 매출장부 누락과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작성한 장부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다.

**(상황 4)** 1년차 공인회계사 B는 유형자산 계정의 감사를 배정받았다. 유형자산의 총계는 300억원이다. 감사 과정에서 당기의 감가상각비가 각각 100만원, 20만원, 5만원 과소계상된 오류를 발견하였다. 공인회계사 B는 이 오류가 회계법인의 감사매뉴얼에서 정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명백하게 경미한 오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수정왜곡표시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

모든 입증절차가 종료된 후 공인회계사 A가 수정하여야 할 사항을 집계한 결과 어떠한 수정사항도 없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A는 갑㈜에 수정을 권고하지도 않고 감사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상황 5)** 감사과정에서 공인회계사 A는 어떠한 중요사항도 왜곡표시되지 않았다고 확신하였다. 갑㈜에 대한 감사는 종료되었으나 감사보고서는 발행 전이다. 갑㈜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주요 재무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사업보고서에 포함하였다. 동 사업보고서는 회계감사기준 및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인이 검토하여야 할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문서’에 해당한다.

공인회계사 A는 회사가 작성한 상기 사업보고서를 공시 전에 입수하고 검토과정에서 부채비율이 중요하게 잘못 계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원인은 회사의 담당자가 유동부채의 총계(800억원)를 부채총계로 잘못보고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감사인은 지금이라도 사업보고서를 수정하도록 회사에게 권고하였으나 회사의 경영자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경영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에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제 3】(12점)**

**※ 다음의 기본정보는【문제 3】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이다.**

**<기본정보>**

오늘회계법인은 KOSDAQ 상장기업인 갑㈜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오늘회계법인은 2012년 3월 초에 갑㈜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2011년까지의 외부감사인은 어제회계법인이었으며 어제회계법인은 갑㈜의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 아래 각 물음은 서로 독립적인 질문이다.**

**(물음 1)** 오늘회계법인의 1년차 회계사인 A회계사는 회사의 회계실무담당자와 협의한 내역을 토대로 외부감사계약서 초안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오늘회계법인의 5년차 회계사인 B회계사는 A회계사가 작성한 감사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  |
| --- |
| **외부감사계약서**  갑㈜(이하, “갑”)와 오늘회계법인(이하, “을”)은 을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으로서 갑의 2012 회계연도부터 2014 회계연도까지 3개년간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중 략] …  (1) 을은 갑의 수익인식 회계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기재하기로 한다.  (2) 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사항을 갑에서 적시에 안내하기로 한다. |
|  |

|  |
| --- |
|  |
| (3) 을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정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도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동 손해를 갑에게 배상해야 한다.  … [중 략] …  (4) 감사보수는 일금 50백만원으로 하고 갑은 동 감사보수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한다. 감사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금은 계약시점에, 중도금은 중간감사 완료시에, 잔금은 을이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때에 지급하기로 한다.  (5)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을은 기초잔액에 대한 감사절차의 일환으로 전기감사인의 조서열람 등 201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것이며 동 수행절차에 대해서 갑은 20백만원의 감사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 후단생략 … |

**[요구사항]**

앞의 감사계약서 초안의 문단 (1)에서 문단 (5)까지의 계약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3개 문단을 지적하고 동 사유를 각각 **3줄 이내**로 아래의 답안양식에 따라 기술하시오.

**<답안양식>**

|  |  |
| --- | --- |
| **문단**  **번호** | **수정이 필요한 이유** |
|  |  |
|  |  |
|  |  |

**(물음 2)** 5년차 회계사인 B회계사는 수정된 감사계약서를 들고 감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갑㈜의 회계담당임원 난몰라씨를 만나게 되었다. 난몰라씨는 영업부서에 근무하다가 2012년부터 회계담당임원으로 부임한 사람이다. B회계사는 난몰라씨와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  |
| --- |
| **난몰라**: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B회계사**: 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2년 감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부탁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난몰라**: 우리 회사는 벤처기업으로서 자산규모가 70억원에 크게 미달하고 중소기업기준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므로 외부감사 수감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꾸준히 받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요 주주 중에 중국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사 한 명을 파견시키고 있고요. 최근에 부임한 중국 주주회사에서 파견 나온 이사는 왜 5천만원씩이나 지출하면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요즘은 재무제표 왜곡에 대해서 외부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자주 있잖아요. 중국에서 온 이사에게 신뢰도가 높은 오늘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음으로써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경영진의 책임이 면책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계사님, 2012년도 감사 진행하시면서 내부통제제도에 대해서도 테스트하실 거죠? 우리회사의 주요 매출처인 병㈜가 매년 우리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있어요. 병㈜는 테스트 범위와 항목을 자세하게 지정하고 있어요. 매년 회계부서 직원들이 병㈜에 보고할 내부통제 테스트를 한다고 고생이 많았지요. 금년부터는 오늘회계법인이 재무제표감사의 일환으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시면 그 결과를 기초로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고객인 병㈜에게 보고할까 합니다. |

|  |
| --- |
|  |
| **<추가정보>**  B회계사는 갑㈜의 2012년 재무제표 감사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와 수준의 내부통제 테스트를 수행할 계획이며 동 계획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요구사항]**

B회계사는 갑㈜의 회계담당임원 난몰라씨의 상기와 같은 외부감사에 대한 이해와 기대 중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고자 한다. 난몰라씨의 외부감사에 대한 이해 중 바로잡아야 할 부분 **세 가지**와 그 이유를 **각각 3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답안양식>**

|  |  |
| --- | --- |
|  | **바로 잡아야 할 부분과 이유** |
| 1 |  |
| 2 |  |
| 3 |  |

**(물음 3)** B회계사는 갑㈜의 2012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기초잔액에 대해서도 감사확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감사인의 감사결과를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전기감사인 어제회계법인의 감사절차를 검토하던 B회계사는 어제회계법인이 2011년말 현재 중요한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조회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매출채권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른 대체적인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요구사항]**

위 사실이 B회계사가 기초잔액에 대하여 전기감사인의 감사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감사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4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물음 4)** B회계사는 매출액의 기간귀속과 관련하여 수행한 감사절차를 검토하던 중, 전기감사인인 어제회계법인이 보고기간 종료일 이전에 인식된 매출거래에 대해서 40건의 선적서류를 확인하였고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에 인식된 매출거래에 대해서는 10건의 선적서류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전체표본규모 50개는 적절한 규모이다). 어제회계법인은 매출액의 과대계상위험이 감사목적상 더 중요하므로 보고기간 종료일 이전 거래내역에 보다 많은 테스트를 수행했다고 설명하였다. 갑㈜의 매출 거래들(보고기간 종료일 전후의 거래들 포함)은 선적지인도조건과 도착지인도조건이 혼재되어 있다.

**[요구사항]**

어제회계법인의 매출액 기간귀속과 관련한 감사절차에 대하여 보완해야 할 부분 **2가지**와 그 이유를 **각각 3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물음 5)** B회계사는 갑㈜의 2012년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기인 2011년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회사 경영진과의 협의를 통하여 동 오류사항이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중요하게 왜곡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회사의 경영진은 전기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기로 하였다.

**[요구사항]**

B회계사가 경영진 및 전기감사인인 어제회계법인에게 취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 **3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문제 4】(18점)**

**※ 아래 기본정보는【문제 4】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이다.**

**<기본정보>**

오늘회계법인은 대한민국에 소재한 지배회사인 KR㈜의 2012년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KR㈜는 미국, 중국, 일본 및 대만에 각각 1개씩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대만에 소재한 종속회사는 2012년 중에 인수한 종속회사이다. KR㈜ 및 종속회사들은 모두 12월말 결산법인이다.

오늘회계법인의 A회계사는 총매출액 규모, 당기순이익 규모, 총자산 규모의 금액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미국에 소재한 US Co.와 중국에 소재한 CN Co.를 중요한 종속회사로 결정하였다. 지배회사와 각 종속회사의 감사인 현황, 주요 재무정보 및 각 감사인들이 판단한 중요성 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US Co. | CN Co. | JP Co. | TW Co. | 연결  재무제표 |
| 소재국 | | 미국 | 중국 | 일본 | 대만 |  |
| 총 매출액 | | ￦ 460 | ￦ 420 | ￦ 210 | ￦ 90 | ￦1,285 |
|  | 내부거래매출 | 200 | 300 | 10 | 85 | 0 |
|  | 제3자 매출 | 260 | 120 | 200 | 5 | 1,285 |
| 당기순이익 | | ￦ 35 | ￦ (55) | ￦ 12 | ￦ 8 | ￦ 110 |
| 총자산 | | ￦ 320 | ￦ 380 | ￦ 190 | ￦ 100 | ￦1,325 |
| 외부감사인 | | Boston Audit LLP | 천안문  회계법인 | 메이지회계법인 | 청도  회계법인 | 오늘  회계법인 |
| 중요성금액 | | ￦ 5 | ￦ 4 | ￦ 3 | ￦ 2 | ￦ 15 |

(\*) 해외종속회사의 재무정보는 원화상당액으로 환산된 금액임.

지배회사인 KR㈜와 4개 해외종속회사들은 수출거래를 통하여 내부 매출·매입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부거래의 규모는 중요한 수준이다. KR㈜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결대상 회사간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있다. 대만에 소재한 TW Co.는 외화표시 차입금의 미래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요한 규모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오늘회계법인의 A회계사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한 종속회사의 감사인인 Boston Audit LLP와 천안문회계법인의 감사계획과 결과를 유기적으로 협의하는 감사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 아래 물음들은 서로 독립적이다.**

**(물음 1)** 오늘회계법인의 A회계사가 연결감사목적으로 중요한 종속회사(중요 부문)를 결정할 때 고려한 요소 이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상기의 기본정보에서 찾아서 **3가지**만 기술하시오(특정 종속회사가 중요한 종속회사로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답변할 필요는 없으며 고려해야 할 사항의 기술만 요구됨).

**(물음 2)** 오늘회계법인 A회계사가 KR㈜의 2012년 연결재무제표 감사에 종속회사 감사인인 Boston Audit LLP와 천안문회계법인의 감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려면 종속회사 감사인(타감사인)의 독립성과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감사의 초기 계획단계에서 타감사인의 적격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에서 예시한 항목을 **2가지만** 기술하시오.

**(물음 3)** 지배회사의 감사인인 A회계사는 KR㈜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내부거래가 적절하게 제거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회사의 내부통제절차에 의존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내부통제 시사를 수행할 때 회사의 **내부거래제거 관련 내부통제활동** 중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2가지** 사항을 각각 **2줄 이내**로기술하시오.

**(물음 4)** 지배회사 KR㈜의 감사인인 오늘회계법인 A회계사는 종속회사 US Co.의 감사인인 Boston Audit LLP로부터 US Co.의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받았다.

|  |
| --- |
| “Boston Audit LLP는 매출채권의 고유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내부통제에 대한 시사를 통하여 통제위험은 보통수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매출채권이 US Co.의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계정과목인 점을 고려하여 매출채권에 대하여 낮은 수준의 적발위험을 적용하여 입증절차를 수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감사절차를 계획하였다.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적극적 조회절차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회사의 재무보고 일정을 고려하여 매출채권에 대해서 10월말을 기준일로 조회를 수행하고 11월과 12월 중의 매출채권 증가내역과 감소내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감사절차를 수행함으로써 12월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한 감사확신을 확보하기로 계획하였다. 조회의 범위는 최대수준의 표본을 추출하기로 하였다.” |

지배회사 감사인인 A회계사는 종속회사 US Co.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현재 계획보다 더 낮은 수준의 적발위험을 적용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감사위험에 대한 더 적절한 대응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요구사항]**

위 상황에서 Boston Audit LLP가 계획한 매출채권 조회절차에 대해서 어떠한 변경을 제안할 수 있겠는가? **3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물음 5)** Boston Audit LLP는 종속회사 US Co.의 매출거래의 형태가 복잡하지 않아 고유위험이 보통의 수준이고 매출인식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시사결과 통제위험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여 매출액에 대하여 추가적인 입증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보고하였다.

**[요구사항]**

A회계사는 매출액의 성격상 중요한 계정에 해당하므로 일정수준의 입증절차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Boston Audit LLP의 감사절차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였다. A회계사가 추가적인 입증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3가지** 기술하시오(항목별로 각각 **3줄 이내**로 기술).

**<답안양식>**

|  |  |
| --- | --- |
| 1 |  |
| 2 |  |
| 3 |  |

**(물음 6)** 종속회사 CN Co.의 감사인인 천안문회계법인은 매출액과 관련한 고유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매출액과 관련한 내부통제 시사의 범위, 성격 및 시기를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내부통제제도의 시사 결과, 통제위험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입증감사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발위험의 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입증절차를 수행하였다.

매출액에 대한 입증절차를 수행한 결과 매출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가 다수 발견되었다. 동 오류의 영향으로 매출액 및 매출채권이 각각 5억원 만큼 과대 계상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종속회사 감사인은 동 사실을 CN Co.의 경영진에게 보고하였다.

**[요구사항]**

위 사실을 보고받은 오늘회계법인 A회계사가 천안문회계법인의 CN Co. 매출액에 대한 감사위험 평가와 수행한 감사절차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5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물음 7)** 종속회사 CN Co.의 감사인인 천안문회계법인은 CN Co. 재무제표에 대하여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고 2013년 1월 31일자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다. 다만, 지속적인 손실로 인한 거액의 누적결손금과 2013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의 상환능력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사유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동 사실을 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으로 기재하였다.

2012년 12월말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포함된 CN Co.의 순자산가액과 관련 영업권 잔액은 각각 (-)10억원과 40억원이었다. 한편, KR㈜의 경영진은 2013년 2월 중에 CN Co.의 매각작업에 착수하여 오늘회계법인의 연결감사보고서 발행 이전인 2013년 3월 중순에 독립적인 제3자에게 매각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매각가액은 60억원이었다.

**[요구사항]**

종속회사 감사인인 천안문회계법인의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특기사항 기재가 지배회사 감사인인 오늘회계법인이 수행해야 할 2012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사유를 **3줄 이내**로 아래 답안양식에 따라 기술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영향여부** | **이 유** |
|  |  |

**【문제 5】(17점)**

갑회사의 현장감사 책임을 맡고 있는 A회계사는 감사보조자인 회계사들에게 갑회사에 대한 세부감사계획을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지시를 하였다.

|  |
| --- |
| “이번 감사일정은 매우 바쁠 것 같습니다. 모든 감사절차를 빠짐없이 수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듯 하니 감사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각자 맡은 계정의 성격에 비추어 중요한 **경영자 주장**(management assertions)을 입증하는데 집중해 주세요. 자산은 **실재성**, 부채는 **완전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같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감사절차를 취한다면, 만약 반대 방향의 부정 또는 오류가 있더라도 회계 논리상 감사과정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각 계정을 담당한 분들과 좀더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감사조서는 제가 수시로 검토하겠습니다.” |

**(물음 1)** 다음은 매입채무 계정을 담당한 B회계사와의 대화 내용이다.

|  |
| --- |
| **A회계사**: 매입채무에 대해서도 조회서를 보내는군요. 거래처 선정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B회계사**: 외부조회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 비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매입채무 보조부상 잔액이 큰 매입처를 중심으로 선정할까 합니다.  **A회계사**: 매입채무에 대해 다른 감사절차는 무엇을 할 생각입니까?  **B회계사**: 매입채무 보조부에서 적정량의 표본을 추출하여 매입 증빙서류와 대조해볼 예정입니다. |

**[요구사항]**

B회계사의 답변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매입채무에 대하여 A회계사가 만족할만한 기타의 감사절차를 기술하시오(**10줄 이내**).

**(물음 2)** 다음은 재고자산을 담당한 C회계사와의 대화이다.

|  |
| --- |
| **A회계사**: 재고자산은 주로 어떤 감사절차를 취할 생각인가요?  **C회계사**: 타처보관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조회서를 보내고, 회사가 보관 중인 재고자산은 재고실사입회시 재고기록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직접 실사를 해볼 예정입니다.  **A회계사**: 주로 실재성을 확인하는 감사절차이군요. 재고자산이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재고자산은 실재성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고가 빠짐없이 장부에 계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감사절차를 보완해 주세요. |

**[요구사항]**

A회계사가 재고자산에 대해서 감사절차를 보완하도록 지시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5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물음 3)** 다음은 매입, 매출거래의 표본거래 테스트를 담당한 D회계사의 감사절차와 관련한 대화이다.

|  |
| --- |
| **A회계사**: 지난 해에는 매입거래를 담당했는데, 올해는 매출거래까지 맡았군요. 표본거래도 꽤 많이 추출하였고 확인 결과 예외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D회계사**: 매입, 매출거래가 회사의 규정대로 장부에 기록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입처원장 및 매출처원장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전표 및 관련 증빙들과 대조해 보았고, 그 결과 예외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회계사**: 그렇습니까? 얼마 전 영업부서에서 판매대금 중 일부를 횡령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위 감사절차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구사항]**

A회계사의 기대에 비춰볼 때 D회계사가 감사절차를 보완할 때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을 **5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물음 4)** 감사조서에 기재된 다음의 감사절차는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자의 주장 중 어떤 것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지 기입하시오.

|  |  |
| --- | --- |
| **감사절차** | **경영자 주장** |
|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 a ) |
| 감가상각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 ( b ) |
| 모든 재고자산에 재고조사표가 부착되어 수량조사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검토하였다. | ( c ) |
|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하였다. | ( d ) |
| 현금과 유가증권을 실사하였다. | ( e ) |

**【문제 6】 (12점)**

초도감사계약을 체결한 을회사는 은행간 자금대체거래가 빈번한 편이다. 중간감사시 을회사의 대표이사는 감사책임을 맡고 있는 A회계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
| --- |
| “저희 회사는 규모에 비해서 자금거래가 많은 편입니다. 관리직원도 충분치 않아서 회계와 자금업무를 도맡아 하는 김이사가 고생이 많지요. 분기마다 결산결과를 보고 받고 있는데, 그동안 불미스러운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답니다. 휴가도 반납하고 회사 일에만 몰두하니, 김이사는 저희 회사의 기둥인 셈이지요.” |

**(물음 1)** 위 상황에 대해서 A회계사는 회사의 내부통제가 취약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생각할 수 있다. 다음의 업무분장에 대한 설명에서 (가)와 (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하시오. 그리고 적절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 상황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3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  |
| --- |
| 현금예금에 대한 기본적인 통제절차로서 거래의 [ (가) ], 거래의 집행, 거래의 [ (나) ] 및 자산의 보관기능은 각각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물음 2)** A회계사는 B회계사에게 2x12년 6월말을 전후한 은행간 대체거래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 다음은 B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조서의 내용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거래은행 | | 지급은행 인출일자 | | 예입은행  예입일자 | |
| 수표 | 지급은행 | 예입은행 | 회사장부 | 은행 | 회사장부 | 은행 |
| #100 | A | B | 6/29 | 6/30 | 6/29 | 6/29 |
| #102 | C | D | 6/30 | 7/1 | 6/30 | 6/30 |
| #103 | C | A | 7/1 | 7/3 | 7/2 | 7/2 |
| #106 | D | A | 7/1 | 7/1 | 7/1 | 6/30 |

A회계사는 B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조서를 검토한 후, 특정 거래가 현금예금의 부족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의심 대상이 되는 수표번호를 지적하고, 그 판단 근거를 **5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의심 수표번호** |  |
| **판단 근거** |  |

**(물음 3)** 다음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초래할 수 있는 자금 관련 부정 사례들이다.

|  |
| --- |
| (a)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사채시장에서 급전을 차입하여 급한 지출에 충당하고, 이들 거래를 회사 장부에는 기입하지 않았다.  (b) 수금한 매출채권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다.  (c) 은행에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인출거래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

위 항목 중 **(물음 2)**의 부정행위를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고르시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a)～(c)의 상황이 각각 초래하는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내용을 기재하시오.

**<답안 양식 및 작성사례>**

|  |  |
| --- | --- |
| **(물음 2) 관련 항목** |  |

|  |  |
| --- | --- |
| **번호** | **왜곡표시 계정과목과 왜곡표시 내용** |
| *[예시]* | *재고자산 과대계상* |
| (a) |  |
| (b) |  |
| (c) |  |

**【문제 7】(14점)**

**(물음 1)**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1) (감사의 목적) 감사는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관련 법규(외감법 제2조의2)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경영자의 보고내용을 검토하고, 동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위 (1)과 (2)에서 설명한 회계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 업무에 인증업무개념체계 상 **인증업무 구성요소 별** 해당 내용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회계감사 업무**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업무** | **인증업무 구성요소** |
| 감사인, 경영자, 정보이용자 | 감사인, 경영자,  정보이용자 | **(가)** |
| 감사대상 재무제표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 **(나)** |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관련 법규(외감법 제2조의2),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 **(다)** |
| 회계감사기준 적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 |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
| 감사보고서  (합리적 확신) | 검토보고서  (소극적/보통수준의 확신) | 합리적 확신업무와 제한적 확신업무 각각의 성격에 적합한 형태의 인증보고서 |

**[요구사항]**

위 표에서 (가), (나), (다)에 해당되는 **인증업무 구성요소 항목**을 기재하시오.

**(물음 2)** 다음은 국내 외부감사 관련 제도와 법규 내용의 설명이다.

|  |
| --- |
| ①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이하 동일)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하여 3개 사업연도 중 최초 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 ② 회사(감사대상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법적 책임을 다툴 경우, 외감법은 감사인(피고)이, 민법은 회사(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다. |
| ③ 자유수임방식 감사계약에 따른 감사인의 독립성 위협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감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해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기업은 감사위원회)가 승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
| ④ 외감법에서 정한 품질관리감리와 감사보고서감리의 주체는 증권선물위원회이다. 다만, 주권상장법인(금융기관 포함)의 감사보고서감리와 일정기준 이상의 대규모감사인의 품질관리감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실시하고, 주권비상장법인(금융기관 제외)의 감사보고서감리와 소규모감사인의 품질관리감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함께 수행하고 있다. |
| ⑤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동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요구사항]**

국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앞의 설명 내용의 각 항목 별로 설명이 맞는지 여부를 다음 답안양식에 표시하고(맞으면 O, 틀리면 X), 잘못된 항목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과 올바르게 수정할 경우의 내용을 함께 기재하시오.

**<답안 양식과 작성 예>**

|  |  |  |
| --- | --- | --- |
| **번호** | **O/X** | **수정필요 내용** |
|  | *O* | *없음* |
|  | *X* | *“주주”를 “주주 및 이사회”로 수정* |

**(물음 3)** 정보시스템환경에서의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절차로서 (a) 컴퓨터자체감사방법(auditing through the computer)과 (b) 컴퓨터주변감사방법(auditing around the computer)이 있다.

다음은 판매활동 및 급여지급활동에 관련된 내부통제질문서의 예이다.

|  |
| --- |
| (가) 매출주문거래가 외상판매 신용한도 내에서 승인되는가? |
| (나)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해서 급여지급 처리가 이루어지는가? |

**[요구사항]**

위 (가)와 (나)의 내부통제질문서 항목에 대해서 (a), (b)의 방법을 각각 적용한 내부통제감사절차를 설계하시오(단, 컴퓨터자체감사는 시험자료법[모의자료법 또는 test data approach]을 적용할 것).

**<답안 양식>**

|  |  |  |
| --- | --- | --- |
| **구분** | **(a) 컴퓨터**  **자체감사방법**  (auditing through the computer) | **(b) 컴퓨터**  **주변감사방법**  (auditing around the computer) |
| **(가) 신용판매 통제절차** |  |  |
| **(나) 급여처리 통제절차** |  |  |

**- 끝 -**

여 백